

여성의 범죄자화 과정에 대한 소고

이 수 정[†]

양 원 석

경기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여자 청소년 범죄자들의 증가추세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형사사법의 기초 변화가 최근 눈에 띄는 여성 범죄자들의 증가추이와 어떻게 유관한 것인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주의 범죄학의 관련 문헌을 리뷰하고 미국의 사법제도 내에서도 형사정책적 강경화 정책이 여성 범죄자 수의 추이를 어떻게 변경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유사한 패턴이 우리나라의 사법기조에도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부 자료는 국내의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나 연구의 논리적 구조는 대체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주제어 : 여자 청소년범죄자, 여성주의범죄학, 성 편견, 범죄자화 과정

[†] 교신저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442-7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94-6
E-mail : suejung@kyonggi.ac.kr

최근 범죄학자들은 여성의 범죄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여성이 지닌 개인적 혹은 사회환경 하에서의 특성에 대한 고유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Bloom, Owen, & Covington, 2004; Chesney-Lind & Pasko, 2004; Kruttschnitt, 1996; Moffit, Caspi, Rutter, & Silva, 2001). 현존하는 대부분의 범죄원인론은 남성 범죄자들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고 또한 이를 토대로 형사정책적 의사결정도 고안되었기에,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 혹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성별 상 공정한(gender fair) 설명기제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에 대하여 미시적인 설명기제를 탐색하는 연구영역에서는 여성의 반사회적 행동과 사법체계의 개입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개인 수준에서의 위험요인(Javdani, Sadeh, & Verona, 2010; Moffit, et al, 2001)에 주목하여 왔다. 특히 심리학 영역에서는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 요인만을 중점적인 설명기제로서 선택하여 왔는 바, 여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도 정신장애적 요소,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그 원인으로서는 제안하여 왔다. 이 같이 개인적 요인에만 주목하는 분야에서는 여성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둘러싼 제도적·사회정책적 요인에 대하여 주의를 크게 기울이지 못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여성주의적 범죄이론가들(예를들면., Messerschmidt, 1986)은 여성의 범죄를 이해하려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여성도 남성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계층으로서 힘과 기회의 박탈로 인하여 범죄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Daly & Chesney-Lind, 1988)은 여성의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남성 중심의 범죄원인론을 여성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노력 대신에, 여성의 범죄자화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가부장적인 가족 내에서 약자인 여성이 어떻게 피해자화 되고 이후에도 사회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여성이 어떻게 가해자화 되는지 주목하였다(Chesney-Lind, 1997; Widom, 2000). Maher(1997)는 여성들의 강력범죄는 대부분 자신을 학대 하였던 대상을 향하여 발생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박탈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하지만 Miller(1998)는 남성 강도와 여성 강도를 비교한 결과, 기본적인 범행동기에서는 Maher(1997)가 지적하였던 것과 같은 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대신 대부분의 여자 강도들은 가족이나 공범들에 의하여 성적인 혹은 신체적인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여성 범죄자들은 이미 아동·청소년기부터 신체적이며 성적인 학대를 입고 그 결과 가출을 하게 되고, 거리로 나온 여자 청소년들은 생존을 위하여 매춘과 약물거래, 절도를 하게 되며, 알콜 사용 등의 지위비행이나 마약복용, 마약거래, 절도와 성매매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Bloom, & Covington, 1998; Chesney-Lind, 1977).

Widom(1995)은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범법행위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어린 시절 학대(성적, 신체적, 방치)를 당한 청소년의 경찰 체포율은 26.0%인데 비해, 어떤 형태의 학대도 받지 않은 경우의 경찰 체포율은 16.8%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성인기 경찰 체포율 역시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은 집단(28.6%)이 그렇지 않은 집단(21.0%)에 비하여 높아, 어린 시절의 학대는 생애 전반에 걸쳐 범법행위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적 학대의 경험이 다른 유형의 학대경험(신체적, 방치)에 비하여 꼭 비행행동에 더 큰 위험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어린 시절 피학대 경험이 여자 성인의 범죄와 꼭 관련되지는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범죄보다는 성문제, 우울감, 자살, 성인기 동안의 재피해화, 성학대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보이나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가 막상 성인 여성의 범죄에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Beitchman, et al.,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청소년들의 성비행에는 성적 학대가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Widom(2000)은 여자 청소년에게 있어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경험은 유독 성비행자에게서 두드러진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에서도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피해경험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케 하는 연구가 수행된 적이 있다. 여자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영실(2002)은 성적 및 신체적 학대는 가출로 이어지고, 가출을 한 여자 청소년들은 가출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이나 남자 가출 청소년에 비하여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다른 연구(최영신, 2005)에서는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그리고 성매매 여성지원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자 비행청소년들의 성추행을 포함한 성학대 경험률은 50.0%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 그리고 강제추행 피해율이 19.4%에 이르는 것

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신현희, 이백철, 2008). 즉 여자 청소년 범죄자들은 가해행위를 함과 동시에 심각한 수준의 성적 피해경험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범죄자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사법체제 내에서의 성별에 따른 공정성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성의 범죄자화와 사법적 대응의 추이

여성의 범죄 발생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여성의 범죄자화 과정과 연관된 사법제도의 성차별적 의사결정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Javdani, Sadeh, & Verona, 2011). Schur(1983)는 비행이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행위라고만 정의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오히려 타인의 문제행위에 대하여 일반인 혹은 사회가 어떤 정의를 내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자면 경찰의 체포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실제로 해당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연유도 있겠으나 동시에 한 국가의 형사사법적 대응의 수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범죄자화 과정에서도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인 처분의 방향이 무엇이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범죄에 대한 양형의 추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양극화된다. 우선 양형 결정에 있어 여성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남성 피고인에 대한 양형보다 전반적으로 더 관대하다(Moulds, 1978). 이와 같은 현상

표 1. 사법절차에서 성차에 관한 연구 결과들

연구자	내용 요약	연구방법
Visher (1983)	성역할에 불합치한 행동에 대한 관대한 선고(여<남, 남성에게 더 관대함)	횡단 양적 연구
Daly (1987)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지각한 피의자에 대한 관대한 선고 (남성=여성)	횡단 양적 연구
Crew (1991)	성역할에 불합치한 행동에 대한 관대한 선고(여<남자 <남자)	횡단 양적 연구
Horowitz&Potttieger (1991)	심각한 범죄에 관련된 반복체포의 가능성(여성>남성) 가벼운 혐의로 체포(남성>여성) 매춘에 대한 판결가능성(여성>남성) 폭력적이 지 않은(마약, 매춘) 범죄로 구금	횡단 양적 연구
Farnworth&Teske (1995)	성역할에 합치한 행동에 대한 관대한 선고(여>남)	횡단 양적 연구
Johnson&Scheuble (1991)	전체 관대한 선고(여성>남성), 반복적이고 심각한 공격행동에 대한 관대한 선고(남성>여성)	횡단 양적 연구
Bishop&Frazier (1992)	비행에 대한 관대한 선고(여성<남성) 범죄에 대한 관대한 선고 (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Steffensmeier et al, (1993)	관대한 선고(여성>남성), 구금 기간은 남성=여성	횡단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Steffensmeier et al. (1998)	관대한 선고(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Wilkie (1993)	폭력과 마약 범죄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여성>남성) 이 보고서가 두 남성 여성에 대한 수감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횡단 양적 연구
Daly&Bordt (1995)	관대한 선고: 50% 사건에서는 여성>남성 25%의 사건에서는 여성 = 남성	횡단 양적 연구
Williams (1999)	선고 시에 법적으로 무관한 정보의 사법적 사용(ex 가족구성원으로 역할)(여성>남성) 법적으로 관련없는 정보를 기초로 한 구금 기간(ex 전과)(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Kempf-Leonard&Sample (2000)	학대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공식적인 배치를 받을 가능성:여성>남성(모든 사건에서는 여성=남성) 초범이나 폭력범들에게 집 밖의 시설에 가게 하는 조치를 받을 가능성: 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Spohn&Beichner (2000)	관대한 선고: 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Gamble et al (2002)	법적요소 통제 해본 이후 구금 가능성: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Leiber&Mack (2003)	초기절차에서 관대한 선고: 여성>남성, 후의 절차에서 관대한 선고: 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Demuth&Steffensmeier (2004)	관대한 선고: 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Sickmund et al. (2004)	관대한 선고: 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Rodriguez et al. (2006)	폭력범죄에 대한 관대한 선고: 여성=남성 폭력범죄에 대한 구금기간: 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Snyder&Sickmund (2006)	구금율의 증가(1991-2003): 여성>남성	종단 양적 연구
Steffensmeier&Demuth (2006)	관대한 선고: 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Esponosa et al. (2008)	판결 후 양형의 관대함: 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Herzog&Oreg (2008)	자애로운 성차별의 기능으로서 성역할에 불합치한 행동에 대한 거짓의 관대한 선고: 여성<남성	횡단 양적 연구

출처: Javdani et al. 2011

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기사도’(chivalry) 혹은 ‘온정주의(paternalism)’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나 기사도나 온정주의에 입각한 관대한 처벌이 모든 여성 범죄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여성이 저지른 범죄의 내용이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 기준에 어긋난다면 이 여성은 기사도나 온정주의적인 사법판단 대신 더 엄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악녀가설(evil women hypothesis; Bernstein, 1977; Bowker, 1978; Rasche, 1975)이다. Nagel과 Hagan(1982)은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양형기준을 논하면서 기사도/온정주의(chivalry/paternalism)가설과 악녀(evil women)가설은 여성 범죄자를 판정하는데 있어 서로 경쟁하는 논리이기보다 상호보완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만약 여성의 범죄가 여성의 성역할 기준의 연장선에서 이해가 되면 기사도나 온정주의에 입각한 양형이 가능하지만, 만약 여성의 범죄가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난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같거나 더 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표 1).

이처럼 여성 범죄자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는 여성의 입건기록이나 전과경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과거 범법행위를 한 경력은 남성에게 있어서보다는 여성에게 있어 그 이후 발생한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결정적 가중요인, 즉 악녀가설을 입증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Kruttschnitt(1996)은 여자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초범자들은 남자 청소년 초범자들보다 더 관대한 처분을 받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와 같은 관대한 처분 경향은 사라짐을 확인하였다. 또다른 연구자들(Bishop & Frazier, 1992; Johnson & Scheuble, 1991; Leiber & Mack, 2003)은 범죄를 계속하는

여자 청소년들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법원이 더 징벌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의 경우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체포율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높여 여성의 범죄자화 과정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자들(Crew, 1991; Visher, 1983)은 성역할과 일치하는(gender-congruent) 범죄에 대하여서보다 성역할과 불일치하는 범죄에 대하여 여성에 대한 처분이 더 징벌적이 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추세가 갖는 문제는 바로 사법적인 의사결정이 매우 성차별적이란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기사도의 선별적 적용(Crew, 1991), 혹은 관대한 성차별주의(Glick & Fiske, 2001)가 이런 현상을 적절히 해석해준다.

중대범죄에 있어 이와 같은 차별적인 성 관련 철학은 국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손지선과 이수정(2007)은 배우자 살해에 있어 남편을 죽인 여성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량과 부인을 죽인 남자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량은 각기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남편 살해범은 부인 살해범보다 양형이 더 길었다. 또한 남편을 살해한 여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가장의 살해는 양형 가중요인이 되어 양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인의 외도 사실은 부인을 살해한 남자의 감형요인이 되어 양형을 유효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재판부의 입장이 성역할을 기준으로 매우 차별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서, 미국과 같이 심각한 범죄(우리사회의 가치관 내에서)를 저지른 여성들에 대하여서는 악녀가설이 적용됨을 시사해준다.

성차별적인 사법제도 내에서의 범죄자화 과정

중대범죄에 적용되는 성차별적 가설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있는 여성 범죄자들은 여러 가지 사법판단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최근에 나타나는 여성들에 대한 전과력의 증가추이는 이들이 다시금 사법시스템 내에 유입될 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미국에서는 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과거보다 훨씬 통제적인 여러 법률들과 처분들이 생겨나면서, 여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의 경향 역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문제는, 남성 범죄자들에 대한 보다 징벌적인 처분의 적용 속도에 비하여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적인 의사결정의 추이가 상대적으로 더 급속하게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Chesney-Lind, Morash, & Stevens, 2008). 여성 범죄자에 대한 체포율은 1987년도에 비하여 2004년도에 1/3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성 범죄자들에 대한 체포율이 1/5 증가한 데 비하여 높은 수치이다. 또한 1985년부터 2002년 사이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도 남성 범죄자들의 경우 29%증가한데 비해 여성 범죄자들은 92% 증가하였다. 구금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1991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에 남성은 29%, 여성은 98%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청소년들의 범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들의 시설 수용률은 1991년도와 2003년도 사이 23% 증가한 데 비하여 여자 청소년들의 시설 수용률은 88% 증가하였다.

물론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 여성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의 비율은 남성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허나 여성 범죄자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위배되는 과거의 범죄력이란 것이 남성들에 비하여 더 징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사소한 범법행위의 기록도 추후 형사사법적으로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자면 남성 범죄자들만큼 심각한 범죄는 아니더라도 사소한 범죄로 인해 전과력이 누적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Javdani 등(2011)은 이 같은 형사사법 영역에서의 성별 불공정성에 입각하여 앞서 언급하였던 대로 범죄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사법제도로 다시 유입되는지를 지적하였다.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인 여자 청소년들은 초기에는 가출, 무단이탈, 음주 등 지위비행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런 지위비행은 형사사법적으로 남자 청소년들 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은 길거리에서 비슷한 또래나 더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성적 피해(Kempf-Leonard & Johansson, 2007)를 입거나, 또는 비슷한 처지의 여자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 갈취, 폭력 등을 행사하여 폭행으로 다시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 (Chesney-Lind, 1999; Feld, 2009). 이 같은 범죄행위는 결국 성역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된다(Nagel & Johnson, 2004). 지위비행이 소녀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들은 많은데, Snyder(2005)는 여자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하였다. 나아가 연구자들(Puzzanchera & Sickmund, 2008; Schwarz et al, 1990)은 지위비행을 저지른 여자 청소년들이 차후 형사사법제도에 더 깊이 관여될 가능성은 남자 청소년

들에게 있어서보다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엄격하게 하였더니 여자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에 대한 입건률이 더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다(McCluskey et al, 2003). 이 같은 사실들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성폭력 관련 법률들이 오히려 여자 청소년들을 사법제도로 더 많이 유입시킨 모순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여성이 범죄자화 되는 또다른 경로는 약물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중 양측 당사자를 모두 체포하는 제도를 통해서이다(Javdani 등, 2011).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 경미한 불법행위로 사법제도에 유입이 되면 이 같은 과거력은 차후 남성들에게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불공정하게 작용하게 된다.

국내 소년사법체제에 있어서의 변화와 배경, 그리고 그 영향

지위비행에 있어서의 성적 불공정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발생한 소년사법체제의 변화와 그 추이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경우 2008년 6월 22일부터 개정소년법이 시행되었다. 제6차 소년법 개정은 첫째, 상한 연령의 인하와 촉법소년의 연령이 인하되었고, 둘째, 국선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셋째,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꾀하였고 넷째, 검사의 결정전 사전조사 도입,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섯째, 비행예방정책 규정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부발의,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는 국천사상과 교육사상이라

는 두 가지 이념적 조류가 상호영향을 미친 것인데, 미국 역시 이와 비슷한 경향의 소년법 개정이 1974년에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 소년 사법 및 비행방지법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이하 JJDP A)은 소년들에 대한 탈시설화와 성인범들과 소년범들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을 위한 미결구금 시설을 확보할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제6차 개정소년법에서는 다이버전의 확대와 비행초기 단계에서 적극적 선도·보호를 통한 개입으로 범죄예방을 도모하게 되었다(이승현, 2007). 이에 따라 개정소년법은 부가처분이었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조정하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고,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고 단기보호관찰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의 수용 상한기간을 명문화하였다.

최종식(2008)은 제6차 소년법의 개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호주의의 퇴보와 엄벌주의의 강화가 특징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JJDP A와 마찬가지로 국내 개정소년법도 역시 지위비행 또한 우범의 가능성으로 보고 적극적인 조기개입을 통해서 예방을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보다 많은 수의 지위비행 및 경범죄를 사법처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소한 일이 소년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변한 조기개입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사체제의 증가 추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 2와 표 3은 국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예상대로 소년

표 2. 2007년 이전 전체 소년보호처분 현황 (괄호 안은 처분 비율)

연도	처분명 1호	1·4호 (구1.2호)	1·5호 (구1.3호)	4호 (구2호)	5호 (구3호)	6호 (구4호)	7호 (구5호)	9호 (구6호)	10호 (구7호)	단기보호	장기보호	계 (처분)	처분이 내리지 않음 (불처분 +불개시)
										관찰 이상 처분	관찰 이상 처분		
2005	4,166 (19.7)	6,897 (32.6)	7,470 (35.3)	9 (0)	9 (0)	577 (2.7)	5 (0)	1,053 (5.0)	949 (4.5)	6,909 (32.7)	7,479 (35.3)	21,135 (100)	3168
2006	4,596 (22.7)	7,003 (34.6)	6,416 (31.7)	10 (0)	10 (0)	462 (2.3)	10 (0)	883 (4.4)	851 (4.2)	7,013 (34.6)	6,426 (31.7)	20,241 (100)	5021
2007	6,536 (24.3)	10,391 (38.7)	7,639 (28.4)	34 (0.1)	9 (0)	478 (1.8)	27 (0.1)	957 (3.6)	803 (3.0)	6,570 (24.4)	7,648 (28.4)	26,874 (100)	8640

출처 범죄백서(2010)

표 3. 2008년 이후 전체 소년보호처분 현황 (괄호 안은 처분 비율)

연도	처분명 1호	1·2호	1·2·3호	1·2·4호	1·2·5호	1·2·3·4호	1·2·3·5호	1·3호	1·3·4호	1·3·5호	1·4호	1·5호	단기보호	장기보호	계 (처분)	처분이 내리지 않음 (불처분+ 불개시)
													관찰 이상 처분	관찰 이상 처분		
2008	6,214 (20.6)	972 (3.2)	-	3,535 (11.7)	874 (2.9)	765 (2.5)	1,576 (5.2)	227 (0.8)	1,960 (6.5)	1,838 (6.1)	6,259 (20.7)	2,599 (8.6)	12,519 (41.4)	6,887 (22.7)	30,222	9310
2009	5,883 (16.4)	3,388 (9.4)	572 (1.6)	4,891 (13.6)	1,186 (3.3)	1,905 (5.3)	1,581 (4.4)	1,148 (3.2)	2,183 (6.1)	1,731 (4.8)	4,780 (13.4)	1,256 (3.5)	13,759 (38.4)	5,754 (16.06)	35,819	12046

출처 범죄백서(2010)

법이 개정 시행된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체 소년부 송치 건 수와 전체 실 처분 수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불처분, 심리불개시, 기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건수의 증가는 소년법원으로서의 과다 송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단기보호관찰 처분은 명확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장기보호관찰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법에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쇼크구금)가 독립된 처분(8호)으로서 신설되어 장기보호관찰을 쇼크구금처분이 대체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제8호 처분은 2008년 294명 2009년 1269명이 내려졌는데, 합산해서 보면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단기보호관찰 처분이 소년법 개정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내처우인 장기보호관찰 처분이 시설내처우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쇼크구금)로 더 징벌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정된 소년법에서는 수감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보호관찰과 병행 뿐 아니라 각 4, 5호에 단독으로 내릴 수 있게 개정하였으나 병합처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명령 병합처분은 2004년 5574명 2007년 4867명으로 (4000에서 5500명 사이)로 나타난 반면, 2008년 6234명 2009년 7014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명령 병합처분은 2004년 2042명에서 2007년 3819명 사이였는데, 2008년을 기점으로 2008년 6265명 2009년 874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단독 처분 또한 사회봉사명령 2008년 417명, 2009년 1998명이었고, 수감명령의 경우 2008년 843명, 2009년 346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 3 조항 이 다이버전을 통한 선도 역할이 아닌, 오히려 소년들을 사법체제로 유인하는 형태의 처분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세를 설명하는 한 가지 가능성은 앞서 말한 청소년 비행 방지 위해 비행초기 단계의 소년에 대한 적극적 선도·보호를 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송치의 수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소년부 송치 건수, 실 처분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시설수용이 늘면서 관대한 처분이 줄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974년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탈시설화와 다이버전을 통한 ‘core protections’을 표방하는 JJDPA 신설 이후, 보다 적극적인 조기개입을 위하여 경범죄나 지위 비행까지 모두 처벌함으로써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되는 사례(Mulvey & Hicks, 1982)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준다. 문제는 이 같은 소년보호처분의 증가추이가 과연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처벌 강경화가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았다.

소년보호처분에 있어서의 성별에 따른 변화 추이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단호한

표 4. 전체 소년범 비율

	계	남자(비율)	여자(비율)
2004	72770	61179(84.1)	11591(15.9)
2005	67478	57799(85.7)	9679(14.3)
2006	69211	58710(84.8)	10501(15.2)
2007	88104	74174(84.2)	13930(15.8)
2008	134992	108482(80.4)	26510(19.6)
2009	113022	93509(82.7)	19513(17.3)

출처: 범죄백서(2010)

처분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형사 사법적 의사결정에 가중효과를 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판결의 추세는 여자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하여도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법적인 개입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국내 소년범의 성별에 따른 증감세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최근 5년 동안의 소년범죄 처분의 숫자 및 비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표 4는 범죄백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그 결과 여성 소년범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다,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승의 이유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재범이 늘어나 이러한 상승세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남녀 소년범죄자 전과 비율을 찾아 아래 표 5, 6에 기술하였다. 여성 (성인)전과자의 초범 비율을 보면 2005년 23.3%에서 2009년 22.5%로 증감이 반복은 되고 있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 반면 여자 소년범죄자 중 초범의 경우 증가세를 보인다, 2008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2009년에 다시 약간 감소한 점이 나타났다. 또 여성 성인범죄자 중 초범의

표 5. 성인 남녀 범죄자 전과 비율(괄호 안은 전체분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성인(남)	성인(여)	성인(남)	성인(여)	성인(남)	성인(여)	성인(남)	성인(여)	성인(남)	성인(여)
계	1,495,085 (80.3%)	298,764 (16.0%)	1,463,737 (80.2%)	290,865 (15.9%)	1,503,384 (79.8%)	291,395 (15.4%)	1,831,276 (78.9%)	354,731 (15.2%)	1,855,478 (78.7%)	388,598 (16.4%)
1범	202,770 (80.4%)	39,854 (15.8%)	182,002 (80.0%)	36,061 (15.8%)	187,590 (79.4%)	37,096 (15.7%)	226,589 (78.8%)	45,196 (15.7%)	213,197 (77.4%)	47,045 (17.0%)
2범	150,208 (86.3%)	19,252 (11.0%)	137,031 (86.2%)	17,650 (11.1%)	140,326 (85.6%)	18,230 (11.1%)	169,789 (84.8%)	22,667 (11.3%)	159,950 (83.6%)	23,705 (12.3%)
3범	113,839 (89.4%)	10,695 (8.4%)	104,800 (89.3%)	10,067 (8.5%)	108,629 (89.0%)	10,333 (8.4%)	130,928 (88.3%)	13,018 (8.7%)	124,736 (87.0%)	13,807 (9.6%)
4범	84,506 (91.5%)	6,188 (6.7%)	78,596 (91.3%)	5,944 (6.9%)	80,649 (90.9%)	6,032 (6.8%)	97,834 (90.5%)	7,569 (7.0%)	93,842 (89.4%)	8,223 (7.8%)
5범	64,424 (92.9%)	3,911 (5.6%)	60,623 (92.8%)	3,686 (5.6%)	62,774 (92.6%)	3,727 (5.5%)	75,157 (92.0%)	4,678 (5.7%)	73,291 (91.0%)	5,278 (6.5%)
6범	49,503 (93.9%)	2,546 (4.8%)	46,828 (93.8%)	2,414 (4.8%)	48,888 (93.7%)	2,476 (4.7%)	58,092 (93.3%)	3,033 (4.8%)	56,563 (92.3%)	3,391 (5.5%)
7범	37,729 (94.7%)	1,680 (4.2%)	35,805 (94.5%)	1,682 (4.4%)	37,722 (94.2%)	1,741 (4.3%)	46,088 (94.3%)	1,994 (4.0%)	44,667 (93.3%)	2,307 (4.8%)
8범	29,857 (95.3%)	1,202 (3.8%)	29,096 (95.2%)	1,181 (3.8%)	30,402 (95.0%)	1,273 (3.9%)	36,689 (94.6%)	1,491 (3.8%)	36,209 (94.3%)	1,572 (4.0%)
9범이상	119,560 (96.6%)	3,600 (2.9%)	122,848 (96.5%)	3,877 (3.0%)	135,569 (96.5%)	4,050 (2.8%)	170,519 (96.4%)	5,169 (2.9%)	177,146 (96.0%)	5,689 (3.0%)
초범	642,689 (71.5%)	209,836 (23.3%)	666,108 (72.1%)	208,303 (22.5%)	670,835 (71.3%)	206,437 (21.9%)	819,591 (70.1%)	249,916 (21.3%)	875,877 (71.2%)	277,581 (22.5%)

출처: 범죄백서(2010)

표 6. 남녀 소년범죄자 전과 비율(괄호 안은 전체분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년(남)	소년(여)	소년(남)	소년(여)	소년(남)	소년(여)	소년(남)	소년(여)	소년(남)	소년(여)
계	57,453(3.0%)	9,679(0.5%)	58,511(3.2%)	10,501(0.5%)	73,868(3.9%)	13,930(0.7%)	107,830(4.6%)	26,510(1.1%)	93,172(3.9%)	19,513(0.8%)
1범	8,182(3.2%)	1,117(0.4%)	8,036(3.5%)	1,149(0.5%)	10,082(4.2%)	1,449(0.6%)	13,296(4.6%)	2,174(0.7%)	12,940(4.6%)	2,155(0.7%)
2범	4,143(2.3%)	450(0.2%)	3,723(2.3%)	397(0.2%)	4,803(2.9%)	526(0.3%)	6,676(3.3%)	873(0.4%)	6,759(3.5%)	877(0.4%)
3범	2,457(1.9%)	209(0.1%)	2,242(1.9%)	186(0.1%)	2,822(2.3%)	268(0.2%)	3,881(2.6%)	415(0.2%)	4,284(2.9%)	514(0.3%)
4범	1,478(1.6%)	96(0.1%)	1,381(1.6%)	93(0.1%)	1,827(2.0%)	142(0.1%)	2,472(2.2%)	210(0.1%)	2,638(2.5%)	246(0.2%)
5범	912(1.3%)	48(0.0%)	895(1.3%)	69(0.1%)	1,151(1.6%)	74(0.1%)	1,658(2.0%)	120(0.1%)	1,752(2.1%)	153(0.1%)
6범	626(1.1%)	26(0.0%)	615(1.2%)	47(0.0%)	729(1.3%)	35(0.0%)	1,045(1.6%)	85(0.1%)	1,199(1.9%)	88(0.1%)
7범	383(0.9%)	12(0.0%)	373(0.9%)	19(0.0%)	516(1.2%)	27(0.0%)	719(1.4%)	34(0.0%)	818(1.7%)	65(0.1%)
8범	258(0.8%)	7(0.0%)	256(0.8%)	9(0.0%)	311(0.9%)	13(0.0%)	533(1.3%)	33(0.0%)	545(1.4%)	33(0.0%)
9범이상	469(0.3%)	18(0.0%)	467(0.3%)	18(0.0%)	698(0.4%)	49(0.0%)	1,104(0.6%)	71(0.0%)	1,442(0.7%)	63(0.0%)
초범	38,545(4.2%)	7,696(0.8%)	40,523(4.3%)	8,514(0.9%)	50,929(5.4%)	11,347(1.2%)	76,446(6.5%)	22,495(1.9%)	60,795(4.9%)	15,319(1.2%)

출처: 범죄백서(2010)

경우 2005년부터 15.8%의 비율을 유지하다 2009년에만 17.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 소년전과자의 경우 1범의 경우 2005년 0.4%에서 2009년 0.7%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3범인 비율 또한 2005년에는 전체에서 0.7%를 차지하였다가 점차 늘어나 2008년, 2009년 각 1.3%, 2009년 1.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성인범죄자의 경우 2005년 35.2%인데 반해 2009년 38.9%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여자 소년범죄자의 수가 늘어났는데 비하여 성인 여성 초범의 경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또 1범, 1범에서 3범까지의 비율을 여성 성인범죄자와 비교한 결과 전과가 1범인 비율은 여자 소년범만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1-3범까지 전과가 있는 비율은 여자 소년범이나 여자 성인범죄자 모두 증가 추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자 성인범죄자의 비해 여자 소년범의 전과자의 비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일부는 서로 다른 추세를 보였다. 이는 사회환경적 요소의 영향보다는 JJDP(A(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제정 이후 오히려 성적으로 불균등하게 여자 청소년의 입건율이 증가하는 미국의 경우가 여자 청소년들의 성보호라는 미명 아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유입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Visher, 1983; Crew, 1991; Johnson & Scheuble, 1991; Macdonald & Chesney-Lind, 2001; Steffensmeier et al, 2005; Herzog & Oreg, 2008).

미국의 여러 연구자들은 여성 범죄자의 유입경로가 청소년기 지위비행으로 인한 보호처분으로 인해서라고 지적하였으므로 표 7에서는 국내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의

표 7. 보호관찰처분의 추세변화

연도	전체(비율)		소년(비율)		성인(비율)		전체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5	90.2	9.8	87.3	12.7	91.3	8.7	61534	6645	15736	2279	45798	4366
2006	91.1	8.9	85.3	14.7	95.8	7.2	67348	6537	14061	2428	53287	4109
2007	91.8	8.2	85.1	14.9	93.8	6.2	83516	7485	17999	3140	65517	4345
2008	90.9	9.1	83.4	16.6	93.4	6.6	91353	9101	20549	4101	70804	5000
2009	91.5	8.5	82.9	17.1	94.2	5.8	120018	11595	26357	5438	93661	6157

출처: 범죄백서(2010)

표 8.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처분의 증감률

	2006/2005	2007/2006	2008/2007	2009/2008	2009/2005
남자 청소년	-10.6%	28.0%	14.1%	22.0%	68.6%
여자 청소년	6.5%	22.6%	23.4%	24.5%	138.6%

출처: 범죄백서(2010)

빈도 및 비율을 성별로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건수는 최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일 수위의 범죄를 저지른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의 처분 빈도를 전년도 대비 증감률(표 8)로서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에 대한 처분이 남자 청소년에 대한 처분보다 상대적으로 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와 다르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도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하여 사법제도가 과거보다는 훨씬 덜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Macdonald & Chesney-Lind, 2001).

표 9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의 숫자를 성별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앞서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점점 덜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음이 나타난다. 단기,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2008년을 기점으로 매우 증가하였다. 또한 처분의

표 9. 남녀 소년원 처분 현황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호	남	-	-	254	1,116	
	여	-	-	40(13.6)	153(12.0)	
	계	-	-	294	1,269	
9호	남	786(89.9)	707(86.1)	746(86.1)	530(80.7)	651(82.1)
	여	89(10.1)	114(13.9)	121(13.9)	127(19.3)	142(17.9)
	계	876(100)	821(100)	867(100)	657(100)	793(100)
10호	남	609(91.2)	577(89.2)	547(85.0)	609(80.9)	513(79.3)
	여	59(8.8)	70(10.8)	97(15.0)	144(19.1)	134(20.7)
	계	668	647	644	753	647

출처: 소년원 내 통계자료

표 10. 비행청소년에 대한 9, 10호 처분 증감율

	2006/2005	2007/2006	2008/2007	2009/2008	2009/2005
남자 청소년(9호)	-10.0%	5.5%	-28.9%	22.8%	-17.1%
여자 청소년(9호)	28.1%	6.1%	4.9%	11.8%	59.5%
남자 청소년(10호)	-5.2%	-5.1%	11.3%	-15.7%	-15.8%
여자 청소년(10호)	18.6%	38.5%	48.4%	-6.9%	127.1%
남자 청소년(9, 10호)	-7.9%	0.7%	-11.9%	-0.4%	-16.5%
여자 청소년(9, 10호)	24.3%	18.5%	24.3%	0.2%	86.5%

출처: 소년원 내 통계자료

내용은 전체 소년범 대비 여성 비율보다 소년원 송치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호, 10호 처분 모두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다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0은 표 9를 전년 대비 변형하여 성별에 따른 증감율을 계산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특히 남성에 대한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여성에 대한 장,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2008년에 크게 증가하여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호 처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정체된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2008년 48.4% 증가하여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특이한 현상으로서, 여자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만 상대적으로 더욱 흉포화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전반적인 처벌 강경화가 여자 청소년들에게 대해서만 차별적인 가중효과를 낳는 것인지 궁금하게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는 남녀 청소년들 중 강력범죄를 저질

러 폭력으로 연행이 되었거나 또는 사건내용의 심각성으로 인해 형사처분이 된 경우 등에서도 여전히 여자 청소년들의 비율이 소년보호처분에서처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중대범죄에 있어서의 성별에 따른 변화 추이

지위비행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한 보호주의의 지나친 강화가 여자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도 남자 청소년 못지않게 여자 청소년들의 범죄도 흉포화 되어 소년으로서의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의 건수가 결과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우선 최근 5년 동안의 폭력범죄를 죄명으로 한 처분의 숫자를 비교하여 보았다.

우리는 앞서 표 4에서 전체 소년범의 비를 비교하였는데, 2008년을 기점으로 여자 소년범의 비가 대폭 증가하여 유지되는 추세를 확인

표 11. 소년범들의 폭력 관련 특별법 위반 추세

연도별 죄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폭처법(남)	15618	14635	9702	11893	16973	14781
폭처법(여)	4570	4713	4231	5451	7808	6596
상해 (남)	735	755	1819	2381	3117	2554
상해 (여)	152	146	349	392	632	452
폭행 (남)	333	362	1190	1928	3390	2722
폭행 (여)	102	93	355	554	957	780
합계 (남)	16686	15752	12711	16202	23480	20057
합계 (여)	4824	4952	4935	6397	9397	7828

출처: 범죄백서(2010)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 11에서는 폭력범죄 발생이 최근 5년 동안 여자 청소년이나 남자 청소년에게서 모두 일관성 있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5년 동안의 상해와 폭행, 그리고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게 각기 12% 내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즉 폭력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증가추이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시설내처우인 8, 9, 10호 처분에 있어 성별 불균형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는 상반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이 저지른 최근 5년 동안의 폭력범죄 이외의 형사입건 자료를 죄명별, 성별로 비교 분석해보았다. 표 12를 확인해보면, 소년보호처분에서 나타나는 여자청소년의 현저한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폭력범죄 통계와 다르지 않게 여자 청소년의 위법행위가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최근 5년 사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형사입건 되는 소년범죄사건에 있어 여자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사실상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흉포화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건 수와 보호 처분률이 증가하고 있는 결과는, 강력한 보호철학의 등장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여자 청소년들이 사법처리 되는 추세는 미국과 다르지 않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케 한다(FBI, 2008; Feld, 2009; Horowitz & Pottieger, 1991; Javdani, Sadeh, & Verona, 2011; Leiber & Mack, 2003; Macdonald & Chesney-Lind, 2001; Steffensmeier et al, 2005).

표 12. 범죄별 전체 형사입건 수 (괄호 안 성별 대비 비율)

범죄	2005		2006		2007		2008		2009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강도	603 (86.64)	93 (13.36)	684 (89.30)	82 (10.70)	781 (84.07)	148 (15.93)	1041 (84.91)	185 (15.09)	1209 (85.55)	205 (14.45)
공갈	193 (91.10)	45 (18.90)	333 (82.22)	72 (17.78)	470 (83.63)	92 (16.37)	884 (84.51)	162 (15.49)	1273 (85.15)	222 (14.85)
도교법	1092 (95.36)	53 (4.64)	907 (95.68)	41 (4.32)	1111 (96.03)	46 (3.97)	1377 (96.43)	51 (3.57)	1080 (97.04)	33 (2.96)
사기	2842 (72.84)	1060 (27.16)	2514 (72.98)	931 (27.02)	2634 (77.88)	748 (22.12)	3328 (79.45)	861 (20.55)	3965 (82.67)	831 (17.33)
절도	20297 (91.98)	1771 (8.02)	22416 (90.24)	2426 (9.76)	25891 (89.78)	2948 (10.22)	29275 (88.52)	3798 (11.48)	33905 (88.08)	4589 (11.92)

출처: 범죄백서 2010

성매매 관련 법률의 강경화에 따른 변화 추이

성매매특별법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한국여성개발원의 공식입장으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이자 성 착취 범죄이고, 성매매 종사여성은 그 범죄의 피해자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김은영, 2002),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4년 9월 23일에는 성매매 등을 금지하는 법률과 함께 이른바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동시에 시행되었다(임상규, 2005). 이렇게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루어진 성매매특별법으로 대체되었을 때가 첫 번째이고, 2008년 2월

4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용이 달라졌을 때가 두 번째이다.

청소년의 매춘행위에 대하여서는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선 제2장 선도보호에 제8조 보호처분 규정을 두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제9조에서 선도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관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에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매매”와 “성매매피해자”를 규정하는 조문을 두어 윤락행위를 하는 여자 청소년들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4. 성매매특별법의 처분결과

	계		기소	소년보호	가정보호	성매매 보호	기소의 처분	불기소
	남	여						
1998년	31	412	104	38	0	0	38	301
1999년	34	581	81	84	0	0	84	450
2000년	17	508	74	70	0	0	70	381
2001년	83	397	126	102	0	0	102	252
2002년	0	376	95	40	0	0	40	241
2003년	32	195	61	12	0	0	12	154
2004년	18	148	48	13	0	0	13	105
2005년	0	17	4	1	0	0	1	12
2006년	47	177	24	25	0	10	35	165
2007년	23	259	12	51	2	20	73	201
2008년	0	718	31	239	1	45	285	402
2009년	62	524	17	266	0	14	280	289

출처: 범죄백서 2010

물론 이렇게 보자면 성매매에 노출된 여자 청소년들에 대하여 보호 및 재활의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조치는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이 역시도 성매매 피해자인 여자 청소년들을 사법처리로 회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14은 이와 같은 현상이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연도별 통계치의 증감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표 14를 보면 전체 입건율이 구 윤락행위방지법 시행기였던 1990년대 말부터 2004년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점이 보이는데 이는 성매매 등을 금지하는 법률과 함께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자는 법률이 시행된 이유로 보인다.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롭게 보호적인 측면에 법률 개정이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또 여자 청소년들은 성매매 피해자로서 경찰에 의한 입건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년보호 사건으로의 송치가 더욱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 파악된다. 또한 주목할 것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의 추세변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성매매 여자 청소년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역시 JJDPA(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제정 이후 오히려 성적으로 불균등하게 여자 청소년의 입건율이 증가하는 미국의 경우가 여자 청소년들의 성보호라는 미명 아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Visher, 1983; Crew, 1991; Johnson & Scheueble, 1991; Macdonald & Chesney-Lind, 2001; Steffensmeier et al, 2005; Herzog & Oreg, 2008).

여자 청소년들의 범죄자화 과정

우리는 앞서 여자 청소년들의 범위반 행동이 급작스럽게 증가되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철학의 등장으로 체포는 늘고 있어, 그에 따라 여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법처리로 회부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을 가능성(Macdonald & Chesney-Lind, 2001; Leiber & Mack, 2003; FBI(2008); Javdani, Sadeh, & Verona, 2011)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우리나라의 범죄통계도 보호주의에 입각한 여러 가지 사법제도의 변화로 소년법 전체에서 여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표 12). 특히 여자 청소년의 사법처리로 회부되는 정도가 2008년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현재로서는 범죄 자체의 성차별적인 흉포화보다는 비행의 초기단계에서의 과다입건은 동일하게 일어났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분이 성적으로 불균형하게 일어나(Visher, 1983; Crew, 1991; Horowitz & Pottieger, 1991; Johnson&Scheueble, 1991; Bishop&Frazier, 1992; wilkie, 1993; Leiber & Mack, 2003) 유입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표 15에는 지난 5년 동안의 남녀 청소년에 대한 처분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보자면 전반적으로 초범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 초범자의 비율은 2007년까지 17% 정도였던 데 반해 2008년도 이후에는 19.5%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추세와 흡사한 변화가 우리의 사법제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하

표 15. 전체 청소년 범죄자 전회 처분 상황

범죄 명칭	2004(남)	2004(여)	2005(남)	2005(여)	2006(남)	2006(여)	2007(남)	2007(여)	2008(남)	2008(여)	2009(남)	2009(여)
계	57,146	10,176	54,039	8,743	54,620	9,485	68,524	12,334	93,868	20,428	85,449	16,936
가석방	7	0	7	0	6	0	4	1	12	1	8	1
감호소 출소	39	2	35	7	39	2	45	0	61	3	64	9
기소 유예	6,169	753	5,832	628	5,820	641	7,764	854	10,225	1,251	10,726	1,449
기타	5,112	583	4,833	507	4,594	539	5,490	693	7,020	1,066	7,024	925
형집행 정지중	25	4	14	0	7	1	11	0	17	2	14	5
보호 처분	3,475 (91.5)	324 (8.5)	2,752 (91.2)	267 (8.8)	2,534 (90.25)	274 (9.75)	3,464 (88.1)	468 (11.9)	5,538 (87.14)	818 (12.86)	6,653 (86.9)	1,007 (13.1)
선고 유예	120	12	106	10	94	10	120	17	134	14	134	7
선도 유예	1,376	133	1,148	92	1,113	136	1,450	161	1,801	238	1,792	207
수배 중	64	14	52	7	59	13	51	5	52	9	29	9
즉결 심판	1	0	0	0	0	0	2	0	1	0	1	0
집행 유예중	299	30	228	13	193	6	178	5	254	13	232	10
초범	35,743 (82.7)	7,513 (17.3)	35,124 (84.5)	6,762 (15.5)	36,631 (13.1)	7,497 (16.9)	45,593 (82.4)	9,750 (17.6)	62,479 (79.2)	16,409 (20.8)	53,094 (80.7)	12,742 (19.3)
형집행 종료	4,716	808	3,908	450	3,530	366	4,352	380	6,274	604	5,678	565

출처: 범죄백서(2010)

는 여러 법률들과 처분들이 생겨나면서, 여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의 경향 역시 점차 사라지게 되고, 반면 처벌강경화의 추세가 남성 범죄자들에 비하여 여성 범죄자들에 대하여 더욱 가속화된(Chesney-Lind, Morash, & Stevens, 2008)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범죄통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으로 또 하나 염려되는 전제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통하여 형사 사법시스템에 일찍부터 들어오게 되고 이 점이 다시 낙인이 되어 또다시 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 늘어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Macdonald & Chesney-Lind, 2001; McCluskey et al, 2003; Steffensmeier et al, 2005; Kempf-Leonard & Johansson, 2007; Snyder &

Sickmund, 2006; Puzzanchera & Sickmund, 2008; Feld, 2009).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애초부터 신체적, 성적 학대 등이 더 빈번한 환경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가출 이후에도 성매매 등 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이런 환경적인 결핍에 대한 근본적인 충족(구급의 대체로서 자립)이 없이 처벌을 강경화 하는 조치는 성 불균형적으로 이들을 더욱 사법제도로 빠르게 편입시켜 더 중한 범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Feld, 2009). 즉 비행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도입한 형사법적 조기개입이 특별한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차별적인 경로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범죄자화 시키는 통로가 되도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및 논의

우리는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내용이 국내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보호철학의 등장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여자 청소년들의 사법처리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위기 상황에 놓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보호조치는 필요하다.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같은 보호조치가 이들의 결핍을 극복하게 하는 데에 충분히 도움을 주는 대신, 오히려 성차별적인 경로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범죄자화 시키는 통로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Javdani, Sadeh, & Verona, 2010).

여자비행청소년 및 여성수용자에 대한 프로

그램은 특히 여성의 독특한 욕구에 부응하여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성을 고려한 서비스(gender-specific services)라고 부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이런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Bloom & Covington, 1998). 특히 여성 범죄자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어릴 때부터의 성적 피해경험이 그들의 비행력과 무관하지 않기에 이들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은 학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주요 요소로 꼭 포함되어야 한다.(Bloom & Covington, 2001; Owen & Bloom, 2000; Bloom & Covington, 1998; Belknap et al., 1997).

Bloom과 Covington(1998, 2001)은 여성 범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첫째, 여자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의 이론적 관점은 이들이 비행행동에 이르게 되는 과정(성피해 혹은 약물 의존 등)에 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접근해야 한다. 둘째, 여자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욕구, 그리고 이들의 삶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론들(관계이론, 충격이론, 약물중독 이론)에 기초하여야 한다. 셋째, 처우프로그램들은 여자비행청소년들의 권한, 강점, 그리고 자신감을 강화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들은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여자비행청소년들의 욕구와 강점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외상치료, 약물중독 치료 등과 같은 기초적 치료는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국내의 경우에도 여자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된 적이 있다(정종순, 황선희, 김민정, 이종수, 2010). 그

러나 이 같은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것으로서 지속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더욱이 보호 시설을 출원한 후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사회 내 연계 또한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사법제도 내로 여자 청소년들을 계속 유입시키는 일은 결국에 가서는 이들의 범죄자화에 촉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 쓰인 자료들은 공식통계로 한계점이 많다. 특히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의 경우 남자와 여자를 분리한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추후 이 내용에 관한 논문을 쓸 시에는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이러한 통계치를 추가적으로 기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만으로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미국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인 의사결정의 추세가 국내의 사법제도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사법 결정에 있어서의 성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보다 심도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자료만으로 분석된 내용으로도 보호처분을 받은 여자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다시금 사법처리로 회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처분의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보인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성별 공정한 처분의 집행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참고문헌

- 김은영 (2002). 성매매와 형사정책의 기본방향: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형사정책* 14(2), 37-73.
- 손지선, 이수정 (2007).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1-18.
- 신연희, 이백철 (2008). 여자 비행청소년의 성적학대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법무부*.
- 이승현 (2007). 소년보호이념의 변화경향에 관한 고찰-최근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4(4), 131-150.
- 임상규 (2005).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 *형사정책*, 17(1), 179-201
- 전영실 (2002) 여자비행 청소년의 교정처우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부발의,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P0F7J1R1E0L1E1K6U4N1O1S9F6D0R1
- 정종순, 황선희, 김민정, 이종수 (2010). 여자 비행청소년의 성적학대 치유프로그램 개발. *소년보호연구*, 10, 399-496.
- 최종식 (2008). 제6차 소년법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2008
- 정희철(2008). 개정 소년법과 소년사법의 효율성, *고려법학*, 2008, 327-346
- Beitchman, J. H., Zucker, K. J., Hood, J. E., daCosta, G. A., Akman, D., & Cassavia, E. (1992). A review of the long-term effects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16, 101-118
- Belknap, J., Holsinger, K., & Dunn, M. (1997).

- Understanding incarcerated girls: The results of a focus group study. *Prison Journal*, 77, 381-404.
- Bernstein, Nagel, I., Kick, E., Leung, J.T., & Schulz, B. (1977). Charge reduction: An intermediate state in the process of labeling criminal defendants. *Social Forces*, 56 (2), 362-384.
- Bishop, D. M., & Frazier, C. E. (1992). Gender bias in juvenile justice processing: Implications of the JJDP Act.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2, 1162-1186.
- Bloom, B.; and Covington, S. (1998) "Gender-specific programming for female offenders: what is it and why is it important?" Paper presented at the 50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Washington, DC.
- Bloom, B., Owen, B., and Covington, S. (2001). Gender-responsive strategies: Research, practice, and guiding principles for women offenders project. Draft.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 Bloom, B., Owen, B., & Covington, S. (2004). Women offenders and the gendered effects of public policy. *Review of Policy Research*, 1, 31-48.
- Bowker, L.H. (1978). *Women, crim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exington, MA:Heath.
- Chesney-Lind, M. (1977). Judicial paternalism and the female status offender: Training women to know their place. *Crime & Delinquency*, 23, 121-130.
- Chesney-Lind, M. (1997). *The Female Offender: Girls, Woman, and Crime*. ThousandOak, California: Sage
- Chesney-Lind, M. (1999). Contextualizing women's violence and aggression: Beyond denial and demonization. [Editorial]. *Behavior and Brain Sciences*, 22, 222-223.
- Chesney-Lind, M., & Pasko, L. (2004). *Girls, women, and crime*. Thousand Oaks, CA: Sage.
- Chesney-Lind, M., Morash, M., & Stevens, T. (2008). Girls' troubles, girls' delinquency, and gender responsive programming: A review.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1(1), 162-189.
- Crew, B. K. (1991). Sex differences in criminal sentencing: Chivalry or patriarchy? *Justice Quarterly*, 8, 59-84.
- Daly, K. (1987). Discrimination in the criminal courts: Family, gender, and the problem of equal treatment. *Social Forces*, 66, 152 - 175.
- Daly, K., & Chesney-Lind, M. (1988). Feminism and criminology. *Justice Quarterly*, 5, 497-538.
- Daly, K., & Bordt, R. L. (1995). Sex effects and sentencing: An analysis of the statistical literature. *Justice Quarterly*, 12, 141-176.
- Demuth, S., & Steffensmeier, D. (2004). The impact of gender and race-ethnicity in the pretrial release process. *Social Problems*, 51, 222-242.
- Feld, B. C. (2009). Violent girls or relabeled status offender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the data. *Crime & Delinquency*, 55, 241-265.
- Gamble, T. J., Sonnenberg, S., Haltigan, J. D., & Cuzzola-Kern, A. (2002). Detention screening: Prospects for population management and the

- examination of disproportionality by race, age, and gender.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3, 380-395.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American Psychologist*, 56, 109-118.
- Herzog, S., & Oreg, S. (2008). Chivalr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mbivalent sexism: Individual differences in crime seriousness judgments. *Law & Society Review*, 42, 45-74.
- Horowitz, R., & Pottieger, A. E. (1991). Gender bias in juvenile justice handling of seriously crime-involved youth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8, 75-100.
- Javdani, S., Sadeh, N., & Verona, E. (2010). Expanding our lens: Female pathways to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Manuscript under review.
- Javdani, S., Sadeh, N., & Verona, E. (2011). Gendered social forces: A review of the impact of institutionalized factors on women and girls' criminal justice trajectorie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7(2), 161-211.
- Johnson, D. R., & Scheuble, L. K. (1991). Gender bias in the disposition of juvenile court referrals: The effects of time and location. *Criminology*, 29, 677-699. doi:10.1111/j.1745-9125.1991.tb01084
- Kempf-Leonard, K., & Sample, L. L. (2000). Disparity based on sex: Is genderspecific treatment warranted? *Justice Quarterly*, 17, 89-128.
- Kempf-Leonard, K., & Johansson, P. (2007). Gender and runaways: Risk factors,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experience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5, 308-327.
- Kruttschnitt, C. (1996). Contributions of quantitative methods to the study of gender and crime, or bootstrapping our way into the theoretical thicket.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2, 135-161.
- Leiber, M. J. & Mack, K. Y. (2003). The individual and joint effects of race, gender, and family status on juvenile justice decision-making. *Journal of Research on Crime & Delinquency*, 40, 34-70.
- MacDonald, J. M., & Chesney-Lind, M. (2001). Gender bias and juvenile justice revisited: A multiyear analysis. *Crime & Delinquency*, 47, 173-195.
- Maher, L. (1997). *Sexed work: Gender, race, and resistance in a Brooklyn drug market*.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McCluskey, J. D., McCluskey, C. P., & Huebner, B. (2003). Juvenile female arrests: A holistic explanation of Organization Functioning. *Women & Criminal Justice*, 14(4), 35-51
- Miller, J. (1998). Up i t up: Gender and the accomplishment of street robbery. *Criminology*, 36(1), 37-66.
- Moffitt, T. E., Caspi, A, Rutter, M & Silva, P. A. (2001). *Sex differences in antisocial behavior: Conduct disorder, delinquency, and violence in the Dunedin Longitudinal Stu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ulds, E.F. (1978). Chivalry and paternalism:

- Disparities of treat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ester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31 (3), 416-440.
- Mulvey, E. P., & Hicks, A. (1982). The paradoxical effect of a juvenile code change in Virginia.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705 - 721. doi:10.1007/BF00893915
- Nagel, I. H. & Hagen, J. (1982). Gender and crime: Offense patterns and criminal court sanctions. In Morris, N. & Tonry, M. (eds.), *Crime and justice* (pp. 91-14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agel, I. H., & Johnson, B. L. (2004). The role of gender in a structured sentencing system: Equal treatment, policy choices, and the sentencing of female offenders. In P. J. Schram & B. Koons-Witt (Eds.), *Gendered (in)justice: Theory and practice in feminist criminology* (pp. 198-235).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 Owen, B., & Bloom, B. (2000). Profiling the needs of young female offenders: Instrument development and pilot study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Puzzanchera, C., & Sickmund, M. (2008). *Juvenile Court Statistics 2005*.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 Rasche, C.E. (1974). The female offender as an object of criminological research.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 (4), 301-320.
- Rodriguez, S. F. et al (2006). Gender differences in criminal sentencing: Do effects vary across violent, property, and drug offenses? *Criminology*, 87, 318-339.
- Schur, E. M. (1983). *Labeling women deviant: Gender, stigma, and social control*.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Sickmund, M. et al (2004). *Census of juveniles in residential placement data book*.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Snyder, H. N. (2005). *Juvenile Arrests 2003*.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Snyder, H. N., & Sickmund, M. (2006).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06 national report*.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Spohn, C., & Beichner, D. (2000). Is preferential treatment of female offenders a thing of the past? A multisite study of gender, race, and imprisonment.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1, 149 - 184.
- Steffensmeier, D., Kramer, J., & Streifel, C. (1993). Gender and imprisonment decisions. *Criminology*, 31, 411-446.
- Steffensmeier, D., Schwarz, J., Zhong, H., & Ackerman, J. (2005). An assessment of recent trends in girls' violence using diverse longitudinal sources: Is the gender gap closing? *Criminology*, 43, 355-406.
- Steffensmeier, D., & Demuth, S. (2006). Does gender modify the effects of race-ethnicity on criminal sanctioning? Sentences for male and female white, black, and Hispanic defendants.
- Steffensmeier, D., Ulmer, J., & Kramer, J. (1998). The interaction of race, gender, and age in criminal sentencing: The punishment cost of being young, black, and male. *Criminology*,

- 36, 763-798.
- Visher, C. A. (1983). Gender, police arrest decisions, and notions of chivalry. *Criminology*, 21, 5-28.
- Widom, C. S. (1995).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Later Criminal Consequence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search in Brief*, 1-8.
- Widom, C. S. (2000). Child abuse and later effect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Journal*, 242, 3-9.
- Williams, M. R. (1999). Gender and sentencing: An analysis of indicator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0, 471-490.
- Wilkie, M. (1993). Sentencing women: Pre-sentence reports and constructions of female offenders.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Crime Research Centre Research Report No. 9. Nedlands, Australia: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 1차원고접수 : 2011. 6. 28.
수정원고접수 : 2011. 9. 15.
최종게재결정 : 2011. 9. 21.

A review on female's criminalization trajectories

Soo Jung Lee

Won Seok Yang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ally examine the number of female juvenile offenders' increasing trend that recently found in Korean at feminism criminological point of view, and to confirm change of criminal justice's basi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rowth of female offender. To achieve this, we review literature related to feminist criminology and examine which criminal policy was related to increase of female offender in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whether similar pattern was found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s basis. Some data were reconstructed by applying Korean official statistics, but logical structure of this study was almost based on literature study.

Key words : Female juvenile offenders, feminist criminology, gender bias, criminal justice trajectories